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번
- 제출자 : 이병도 의원 외 10명
- 제출자 : 2022년 7월 1일
- 회부일 : 2022년 9월 2일

2.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있으며, 고용·근무 방식이 다원화되는 등 일자리 분야에서도 대전환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런 기술적 변화에 청년층보다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취약한 중장년들은 취업과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통산업의 위축으로 중장년층의 실업률도 증가 추세에 있어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취업과 창업 등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음.

3. 주요내용

- 가. 중장년의 범위를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 수립 근거 및 세부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2.9.7. ~ 9.12.)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제정안의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제 상황과 일자리 여건에 따라 중장년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여 중장년의 취업과 창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 본 제정조례안(이하 ‘본 제정안’)은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장년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계획(안 제3조), 지원사업(안 제4조), 일자리 지원 네트워크(안 제5조), 실태조사(안 제6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홍보, 위탁, 시행규칙 등 사업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본 제정안의 조문구성

-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본칙에 해당하는 부분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사업), 제5조(기관·단체와의 협력), 제6조(실태조사), 제7조(홍보)
 - 보칙에 해당하는 부분 : 제8조(업무의 위탁), 제9조(시행규칙)
-
- 우리나라 중장년의 고용률은 77.5%에서 78.4% 수준이며, 서울지역의 고용률은 68.9% 수준으로 전국 평균 고용률(68.8%)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국의 사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집중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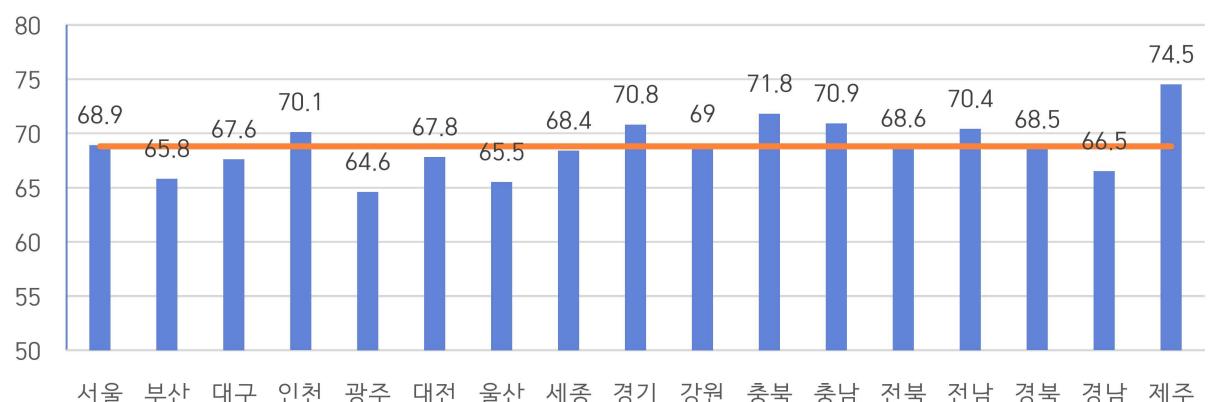
〈 연령별 전국 고용률 현황 〉

(2022년 7월 기준, 단위: %)

데이터기준	연령	고용률	증감(전년동월대비)
202207	15 - 29세	47.7	2.2
202207	30 - 39세	77.5	2.2
202207	40 - 49세	78.4	0.7
202207	50 - 59세	77.5	1.8
202207	60세이상	46.2	1.8

출처 :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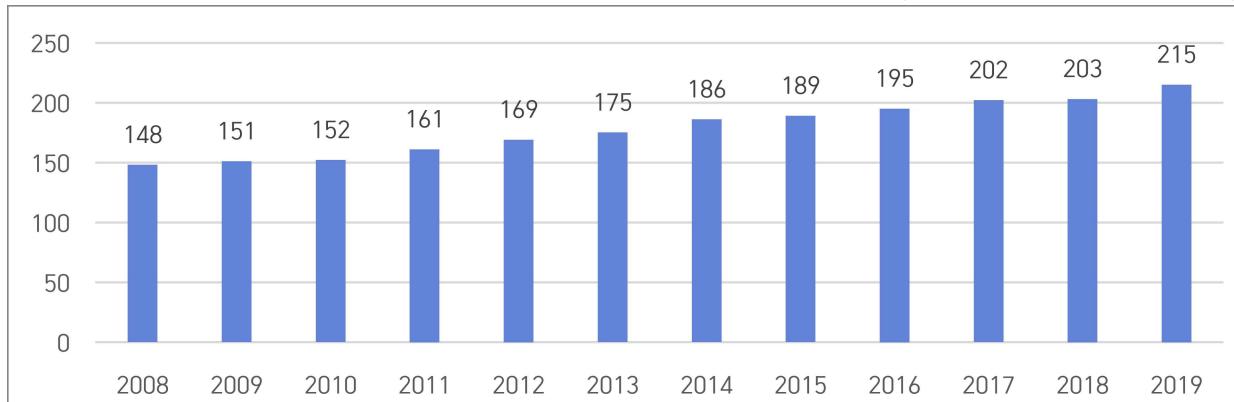
〈 2022년 7월 기준, 17개 광역시·도별 고용률 현황 〉



출처 :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 2022년 7월 기준

〈 전국 사업체 수 증감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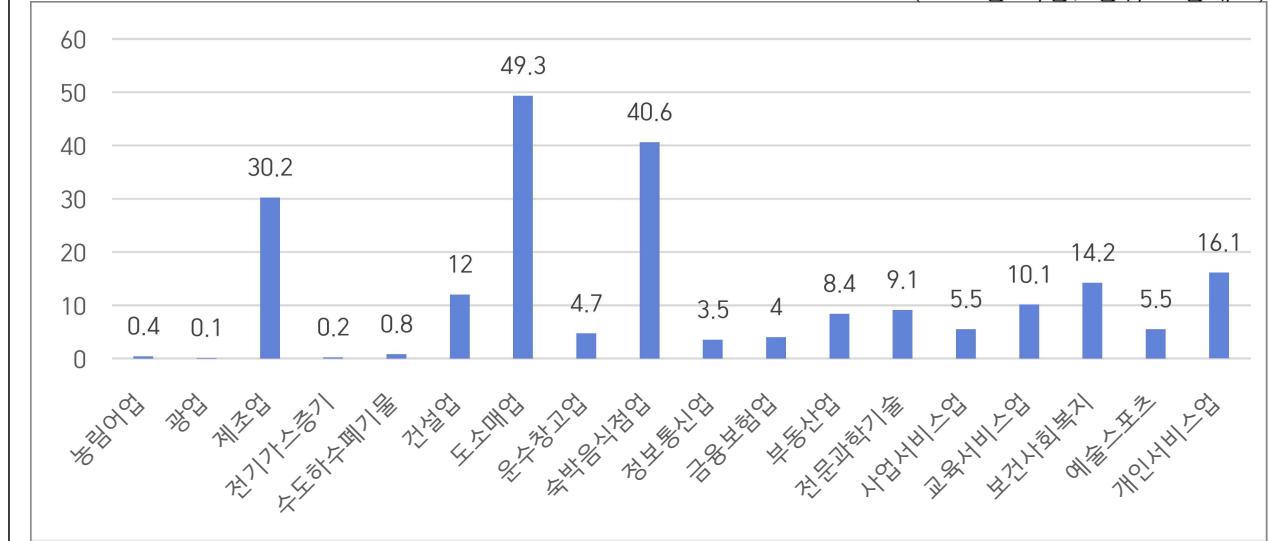
(2019년 기준, 단위, 만개소)



출처 :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 2019년 기준

〈 전국 산업별 사업체수 현황 〉

(2019년 기준, 단위 : 만개소)



출처 :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 2019년 기준

- 중장년층의 일자리와 노후문제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빠른 퇴직에 따른 노후대책 미비로 퇴직 후 다시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중장년층은 단순노무직, 자영업, 저임금 근로 또는 임시직 등으로 집중되고 있고, 경기 악화 시 주요 퇴출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중장년의 일자리 문제를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보임.
- 본 제정안은 일자리 참여 당사자인 중장년의 계획, 지원사업, 실태조사 일자리 협력체계, 사업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어, 광범위한 협력체계가 필요한 일자리 지원 사업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중장년의 일자리에 국한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첫째, 본 조례안 제2조제2항은 ‘일자리 지원’을 일자리 개발,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평생교육 측면에서 생애 전환, 생애 재설계 지원 또는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 조직개편 이전에 창업, 취업, 이직·전직 등을 매개하거나, 중장년 일자리의 기본방향 계획, 취업·창업 현황조사·분석, 일자리 발굴, 구직자 연계, 창업·취업·전직 상담, 창업자금지원, 판로지원 등은 경제정책실에서 추진되었으며, 평생교육국의 업무체계에는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이 없었는바,
 - 효율적·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해 평생교육국은 새로운 사업추진체계 구축에 있어 행정조직 중복설치 및 유사 사업 추진 등의 우려가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 평생교육국은 문해교육, 장애인평생교육, 시민교육 등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조직개편(2022.8.19.)에 따라 50플러스재단이 평생교육국으로 이관되었음.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은 50세 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은퇴 전후의 생애재설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동 재단의 사업영역을 확대·강화하여 본 제정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다만, 50플러스재단은 ‘일자리 지원’ 보다는 생애재설계를 통한 은퇴 후 인생준비, 사회참여 또는 사회공헌 등을 목적으로 사업(상담, 정책개발, 사회공헌 일자리 등)을 추진하고 있어, 취·창업, 일자리 지원, 창업자금지원, 판로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과 업무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바, 서울특별시의 기존 사업과 중복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둘째, 서울특별시만의 특수한 사정과 여건을 고려한 중장년 일자리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서울특별시만의 특수성과 타 광역 시·도와는 다른 여건 등을 반영하여 정부 또는 민간단체와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본 제정안의 취지는 중장년의 일자리를 지원하려는 것인바, 본 제정안의 제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상 차별성 확보와 함께 정부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본 사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고용노동부는 청년·여성·중장년·장애인·외국인 등 대상자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중장년 대상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 민간(노사발전재단, 상공회의소, 경영자협회, 경제인연합회 등)에서도 중장년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바, 중복적인 사업추진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셋째, 기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일자리 지원 사업과 연계 및 협력 또는 협업을 통해 중장년에 특화된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은 서울의 산업기반, 신산업, 금융 등 일자리 지원 사업과 분리할 수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 사업 분석·관리, 성과지표개발과 함께 일자리 개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제공, 전 연령 대상 취업 연계 시스템인 ‘뉴딜 일자리’, ‘서울 일자리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 ‘서울일자리센터’를 설립하여 공공일자리, 취업교육, 창업·취업 지원, 취업·창업 노하우 공유 및 서울시 강소기업 연계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일자리정책과의 고용훈련팀에서는 4개의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어,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기술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나. 세부내용 검토

- 안 제2조제2항은 ‘일자리 지원’을 정의하고 있으나, 대상자를 ‘중장년’이 아닌 ‘미취업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미취업자를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나, 일자리 지원 사업대상을 중장년 중 미취업자로 한정하는 것은 본 제정안의 취지를 반감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 미취업 상태 뿐만 아니라 모든 중장년의 이직·전직, 창업·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미취업자를 중장년으로 수정하여, 본 제정안 취지에 따라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정안	수정의견
제2조(정의) ① (생략) ② “일자리 지원”이란 <u>미취업자의</u>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창업,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일자리 지원”이란 <u>중장년의</u>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창업,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안 제3조의 조 제목은 ‘지원계획 수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3조는 계획수립의 여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계획시행 후 사업결과를 다음연도의 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계획의 개선을 담보하는 것이 주요한 사항이라고 보이는바, 안 제3조의 조제목을 ‘지원계획’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 안 제2조제2항에서 ‘일자리 지원’을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안 제3조제1항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 계획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2조 정의와 안 제3조 지원계획의 목적이 상이한 것으로 보임.
 - 본 제정안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으로, 안 제3조 제1항의 계획의 수립 목적을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를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수정의견
<p>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중장년의 일자리 창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u> 매년 중장기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중장년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u> 매년 중장기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정안과 같음)</p>

- 안 제4조는 지원사업, 안 제5조는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음.
- 중장년 일자리는 사회초년생 또는 노령인구의 일자리와는 다르게 기업의 중역 또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중장년의 특성상 대부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인바,

- 중장년이라는 특수성 반영, 일자리 수요자(중장년층)의 요구의 층족 등을 위해 사업의 각 단계별(상담/인생재설계/교육/정보제공/일자리연계/취·창업 등) 입체적 연계가 중요하다고 보이는바, 철저한 사전조사와 세심한 사업설계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의 제4조와 제5조 〉

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
2.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관한 사업
3. 중장년의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4.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
5.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관·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안 제6조는 중장년 일자리의 현실적·구체적인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주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중장년 요구파악 및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써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실태조사가 요구되는바,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 수립 주기에 맞춰 실태조사의 주기를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정안	수정의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 수립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취업 및 창업현황 등에 대한 <u>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 수립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취업 및 창업현황 등에 대한 <u>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u>
② (생략)	② (제정안과 같음)

- 안 제8조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의 이관방식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사용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행정권한의 이관방식은 위임, 위탁, 민간위탁, 대행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권한의 이관대상, 권한이관에 따른 책임소재 등에 따라 권한의 이관방식이 상이하다고 하겠음.

※ 권한의 이관방식에 책임소재에 따른 구분

- 위임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위탁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 민간위탁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 대행 : 행정기관이 상대방에게 권한을 넘겨주지 않고 자신이 그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면서 그 업무의 수행 만을 맡기는 것

- 일반적인 권한의 이관은 「지방자치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사무 위탁 관련 조례에 따르며, 특별히 개별 조례에서의 위임 또는 위탁·민간 위탁을 규정할 경우 해당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권한의 위임·위탁 등은 권한의 소재를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규칙 단독으로 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대해서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법령 또는 조례의 보충적, 보완적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하고 있음.

- ※ 「정부조직법」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안 제8조는 중장년 일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관련기관이 민간단체 또는 민간기관,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권한의 위임방식(위탁/민간위탁)을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위탁은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등)*에 맡겨 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며,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기관·개인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기는 것임.
- 안 제8조의 취지가 서울특별시의 출연기관 등에게 행정기관(서울특별시)의 사무를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임,
 - 안 제8조의 조제목은 ‘업무의 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위탁’은 ‘민간위탁’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제1항 중 ‘시 출자·출연 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앞선 조·항에서 ‘서울특별시’를 ‘시’라고 약칭을 규정하지 않았는바,
 - 이를 ‘서울특별시로’ 수정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8조제2항의 조례 제명도 정확한 표기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8조(<u>업무의 위탁</u>)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u>시 출자·출연 기관</u>에 <u>위탁</u>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u>민간 위탁</u>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제8조(<u>민간위탁</u>)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u>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u>에 <u>민간위탁</u>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u>민간 위탁</u>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 공공단체 : 국가로부터 그 존립목적이 부여된 공법상의 법인을 말한다. 공법인 또는 자치단체라고도 한다. 공공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이라는 점에서 국가기관과 구별된다. 공공단체의 행위를 자치행정이라 말하며, 공공단체를 자치단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목적이 부여되고, 이에 관한 행정권이 부여된 단체 이므로 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는 것, 설립이 국가의 의도에 의하는 것, 목적을 수행할 의무를 지고 해산의 자유가 없는 것, 또는 어느 범위에 있어서는 국가적 공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 국가의 특별한 감독을 받고 있는 것 등의 특색을 가진다. 공공단체에는 그 조직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영조물법인 등으로 구별된다.(법제처, 국가법 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 6. (생략)

○ 결론적으로, 사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부분이 가장인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 조문의 구체화 및 명확한 용어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민간이나, 정부 및 서울특별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서울특별시와 중장년이라는 두 가지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일자리 지원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정덕	임법조사관	정찬일
------	-----	-------	-----